

수원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가합285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택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3.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 사이의 2018. 3. 30.자 75,000,000원, 2019. 1. 23.자 5,000,000원, 2019. 1. 30.자 10,000,000원, 2019. 2. 20.자 4,000,000원, 2019. 3. 25.자 60,565,795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4,565,795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7. 27.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D은행으로부터 28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242,250,000원, 보증기간 2015. 7. 27.부터 2016. 7.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최종적으로 보증금액 229,500,000원, 보증기간 2019. 7. 26.까지로 변경되었다.

2) C 대표자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2019. 5. 2. C가 D은행에 지급해야 할 이자가 연체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7. 17. D은행에 원리금 233,815,857원(= 원금 229,500,000원 + 이자 4,315,8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C와 B을 상대로 위와 같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구상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전18890호), C와 B은 2019. 7. 25. '원고에게 234,569,360원(= 대위변제금잔액 233,815,857원 + 대지급금 753,503원)과 그중 233,815,857원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및 B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부부 사이인 피고와 B은 공동으로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25. 임대인 E과 임대차기간 2년(2017. 3. 30.부터 2019. 3.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3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일인 2017. 3. 30. H은행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수령

1) 피고, B 및 E은 2018. 3.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을 임대차보증금 380,000,000원에 월차임 65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3. 30. E으로부터 감액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530,000,000원 - 38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2) 또한 피고는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9. 1. 23. 10,000,000원, 2019. 1. 30. 20,000,000원, 2019. 2. 20. 8,000,000원, 2019. 3. 25. 121,132,591원을 지급받았다(E은 2019. 3. 25. H은행에 B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220,643,424원을 직접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합계 309,132,591원(= ① 2018. 3. 30.자 150,000,000원 + ② 2019. 1. 23.자 10,000,000원 + ③ 2019. 1. 30.자 20,000,000원 + ④ 2019. 2. 20.자 8,000,000원 + ⑤ 2019. 3. 25.자 121,132,591원) 중 1/2인 154,565,795원1)은 B의 몫인데, B은 위 돈을 E이 피고의 은행 계좌로 곧바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고, B은 위 각 증여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4,565,7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E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C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거나 가족들의 생계비로 소비하였는바, B의 사해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채무자인 B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으며,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2019. 7. 17. C의 D은행에 대한 원리금을 대위변제한 때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증여계약 이후에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나) 위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2019. 5. 2.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D은행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B은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220,0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도 2019. 3. 25.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② 피고가 최초로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0원을 반환받은 2018. 3. 30.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지난 2019. 5. 2.에야 비로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③ 피고가 2019. 3. 25. E으로부터 121,132,591원을 수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5. 2. C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당시 C 또는 B의 자산 상태가 악화되어 향후 원고가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을 취득할 것이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피고가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변경(피고가 2018. 3. 30. 150,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변경에 따른 것이다) 또는 종료(피고가 2019. 1. 23.부터 2019. 2. 20.까지 합계 38,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임차인이 E에게 임대차보증금 380,000,000원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38,000,000원을 E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에 따른 일련의 계약이행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각 반환 받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행위인 B의 증여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가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수령함으로써 B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중 1/2 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수령함으로써 B로부터 그중 1/2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B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B의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B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이므로 임대차보증금을 1/2씩 부담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수령한 것은 B의 소유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을 B, 피고가 1/2씩 임대인 E에게 지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만약 B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530,000,000원을 1/2씩 지급하였다면 E으로부터 2018. 3. 30. 150,000,000원을 반환받을 당시 이를 전부 피고 계좌에 반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와 B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중 1/2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은 B이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곧바로 임대인 E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순히 거래상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B과 피고 사이에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변제에 해당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위와 같은 변제가 B과 피고 사이에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③ 피고가 2018. 3. 30. E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임대차보증금을 기존의 530,000,000원에서 38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월차임 65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었기 때문이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전에 있었던 위

2018. 3. 30.자 수령행위를 두고서 B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마찬가지로 피고가 2019. 1. 23. 10,000,000원, 2019. 1. 30. 20,000,000원, 2019. 2. 20. 8,000,000원의 합계 38,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되어 임대차보증금 380,000,000원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38,000,000원을 피고가 E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9. 3. 25.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220,643,424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21,132,591원을 수령하였는바, 이처럼 피고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계약이행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채무자 B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8. 3. 30.부터 2019. 3. 7.까지 B 또는 C에게 248,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B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가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B 또는 C에게 입금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18. 3. 30. E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인 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위 150,000,000원을 모두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곧바로 임대인 E으로부터 수령한 것이어서 단순히 거래상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채무자 B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해일, 판사 손지연, 판사 박성덕

1) 피고가 E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309,132,591원이고 그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154,566,295원이나, 원고는 154,565,795원만 구하고 있다(원고는 피고가 2019. 3. 25. 수령한 121,132,591원을 ‘121,131,591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